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0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3년 06월 01일

3. 제안이유

-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,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개정(대통령령 제33312호, 2023.3.2.)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에 따른 운임·숙박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부정하게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
- 부정 수령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
- 국내 출장 시 운임·숙박비 지급기준 개정 (안 별표)
 - 운임 지급기준을 ‘정액’ 에서 ‘실비’ 로 변경
 -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 조정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함(안 제5조 4호 및 8호)

5. 검토의견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46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실비보상 등을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이에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8조의8 제1항에 부정 수령 가산 징수 근거를 두었고, 제2항에서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음.
- 현행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는 여비의 부정 수령 경우 환수 및 가산 징수 근거와 절차가 없었기에 이번 일부개정조례 안은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수령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음.
- 또한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 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의 기

회를 부여하도록 한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내지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.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에 따른 [별표]의 운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, 지역별 숙박비 지급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무출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음.
- 현행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용어 중 정비가 필요한 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정비하였음.
- 종합적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국내 출장에 대한 여비의 현실성 있는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됨.
- 다만, 지역별 숙박비의 지급 상한액 인상되어 향후 5년간 3억 3,787만 5천원이 세출 추계되므로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여비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관리와 부정 수령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.

붙 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